제305회 정례회 2011. 12. 23.(금)

심 사 보 고 서

○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충 청 북 도 의 회 행정문화위원회

「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시 나 보 고 서

2011. 12. 23.(금) 행정문화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일자 : 2011년 11월 9일

다. 회부일자 : 2011년 11월 10일

라. 상정일자 : 2011년 12월 19일

(제30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)

마. 주요내용

○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의결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: 행정국장 박성수)

가. 제안이유

도정비전과 연계된 팀 신설, 여성부서, 복지 분야의 인력보강, 그 밖에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정원 증원사항을 반영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① 정원의 총수 조정 : 2,928명 → 2,964명 (증36명) (안 제2조)
 - 집행기관의 정원 : 1,434명 → 1,470명 (증36명)
- ②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조정 (안 별표3)

총	계	2,928명	\rightarrow	2,964명	(증 <mark>36</mark> 명)
▶ 일1	반직	1,099명	\rightarrow	1,135명	(증 36명)
- 2~	-3급	1명		1명	(변동없음)
-	3급	8명	\rightarrow	8명	(변동없음)
- 3~	$-4 \overrightarrow{a}$	1명		1명	(변동없음)
-	4급	59명	\rightarrow	60명	(증 1 명)
- 5 =	⁷ 이하	1,030명	\rightarrow	1,065명	<i>(증 35명)</i>
※ 정	무, 별정, 연	연구, 지도, 소방, ³	교육, 기능	:직공무원은 변경/	나항 없음.

3. 검토보고 요지

(행정문화전문위원 : 손자용)

금번 개정조례안은 도정비전과 연계된 팀 신설, 여성부서, 복지 분 야의 인력보강, 그 밖에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정원 증원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,

주요내용은

- 정원의 총수를 2,928명에서 2,964명으로 36명 증원하고,
- 일반직 정원 중 4급 1명과 5급이하 35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.

금번 개정조례안은 여성부서 및 복지분야의 인력보강과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정원 증원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.

다만, 증원되는 36명의 산정근거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.

- 4. 질의 및 답변요지 : "생 략"
- 5. 토 론 요 지: "생략"
- 6. 심 사 결 과 : 원안의결
- 7. 소 수 의 견 요 지 : "없 음"
- 8. 기타 필요한 사항: "없음"
- 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 -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본문 중 "2,928명"을 "2,964명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"1,434명"을 "1,470명"으로 하며, 같은조 제4호 중 "의회사무기구"를 "의회사무처"로 한다.

제3조제1항중 "지방공무원종류별"을 "지방공무원 종류별"로 한다.

제4조 본문 중 "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은"을 "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, 정원은"으로 한다.

제5조 본문 중 "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"을 "정원관리 기관별, 직렬별"로 한다.

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3]

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(제4조 관련)

기관별 직급별	총 계	본 청	의 회	직속 기관	사업소	출장소
총계	2,964			_		
정무직계	1	1				
도지사	1	1				
일 반 직 계	1,135			_		
2~3급	1		1			
3급	8	7		1		
3~4급	1	1				
4급	60	40	7	4	7	2
5급이하소계	1,065			-		
별 정 직 계	20			-		
1급 상당	1	1				
5급상당이하소계	19			-	1	
연구직계	139			-		
연 구 관	22	1		19	2	
연 구 사	117			-		
지도직계	24			-		
지도 관	6			6		
지 도 사	18			-		
소 방 직 계	1,382			-		
소 방 정	10	2		8		
소방령이하	1,372			-		
교육공무원계	42			-		
총 장	1			1		
교수・부교수・조교 수・전임강사	30			30		
조 교	11			_		
기 능 직 계	221					

[※] 복수별정은 별정에 포함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	제2조(정원의 총수) 충청북도에 두는 지방 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2,964명 으로 하며,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집행기관의 정원 : 1,470명 2~3. (현행과 같음) 4. <u>의회사무처</u> 의 정원 : 70명
제3조(정원책정기준) ① 지방공무원종류별	제3조(정원책정기준)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
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.	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.
제4조(직급별 정원) <u>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</u>	제4조(직급별 정원)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,
정원은 별표 3과 같다. (이하생략)	정원은 별표 3과 같다. (현행과 같음)
제5조(직렬별 정원) <u>정원관리기관별</u> 직렬별	제5조(직렬별 정원) <u>정원관리 기관별,</u> 직렬
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.	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.

[별표 3]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(제4조 관련)

기관별 직급별	총 계	본청	의 회	当	사 출 업 장 소 소
총 계	<u>2,928</u>				
÷	:				
일반직계	<u>1,099</u>			_	
	• :				
4급	<u>59</u>	7	4	<u>6</u>	1
5급이하	<u>1,030</u>			_	
:	•••				
:	÷				

[별표 3]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(제4조 관련)

기관별 직급별	총 계	본청	의행	직 속 기 관	사 출 업 장 소 소
총 계	<u>2,964</u>				
÷	÷				
일반직계	<u>1,135</u>			-	
÷	<u>:</u>				
4급	60	7	4	7	2
5급이하	<u>1,065</u>			_	
i i	:				
÷	:				

관계법령 발췌

【지방자치법】

- 제112조 (행정기구와 공무원)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
 -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
 - ③~⑥ (생략)

【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】

- 제30조 (정원의 규정)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 - 1. 집행기관의 정원(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)
 - 2. 본청 · 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
 - 3.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
 - 4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
 - 5.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
 -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시·도의 5급 이하(시·군·구는 6급 이하)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
 - ③~⑤(생략)

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1. 비용 발생 요인

○ 정원 변동 : 총정원 2,928명 ⇒ 2,964명 (증36명)

- 일반직 +36명 : 4급 +1명, 5급이하 +35명

2. 비용추계결과

구분(예산과목)	추가 소요비용	비고
총 계	1,943,572,010원	
ㅇ 인건비	1,511,847,010	
- 기본급 - 수 당	1,136,295,600 235,431,790	
- 정액급식비	56,160,000	
- 명절휴가비 - 연가보상비	56,814,780 27,144,840	
ㅇ 물건비	70,500,000	
- 직무수행경비	70,500,000	
ㅇ 이전경비	361,225,000	
- 성과상여금	76,316,000	
- 연금부담금	103,784,000	
- 보전금	106,850,000	
- 퇴직수당부담금	34,573,000	
- 국민건강보험금	39,702,000	